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9. 27. 규정 제717호 1차 개정 2014. 3. 28. 규정 제817호
2차 개정 2014. 7. 1. 규정 제830호 3차 전부개정 2016. 11. 3. 규정 제966호
4차 개정 2016. 11. 24. 규정 제971호 5차 전부개정 2021. 3. 19. 규정 제1178호
6차 개정 2021. 4. 16. 규정 제11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9조에 따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및 임기) ①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및 그 밖에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로서 본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본교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4의3 및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3. “후보자”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총장임용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최종 2인을 말한다.
5.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오공과대학교 소속 총장·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7. “직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금오공과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직원(한시임기제 공무원 제외),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 운영 규정」 제14조의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 대학회계일반직 조교(대체직원 제외) 및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원(무기계약직)을 말한다.<2021.4.16.>
8. “조교”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조교를 말한다.
9. “학생”이란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21조 및 「금오공과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운영 규정」에

다른 대학 및 대학원에 학위과정을 수행 중인 자를 말한다.

10. “졸업생”이란 제9호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관할선관위”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본교의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2.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13.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4. “선거운동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 ②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제4조(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원위원 17인(여성위원 2인 이상)
2. 직원위원 및 조교위원 4인(여성위원 2인 이상)
3. 학생위원 1인
4. 졸업생위원 1인
5. 외부위원 2인(여성위원 1인 이상)

② 추천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 및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5조(위원의 임명)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주체별로 추천을 받아 그 임기만료 7개월 이전에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제1호의 교원위원은 교수회장이 추천한다.
2. 제4조제1항 제2호의 직원위원 및 조교위원은 직원협의회장이 추천한다.
3. 제4조제1항 제3호의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4. 제4조제1항 제4호의 졸업생위원은 총동창회장이 추천한다.
5. 제4조제1항 제5호의 외부위원은 교수회장과 직원협의회장이 각 1명을 추천한다.

②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추천위원회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주체별로 추천을 받아 대체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5호의 외부위원은 대체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

1. 본교 교무위원
2. 휴직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년 또는 장·단기파견 근무 중이거나 공로연수 중인 본교 교원, 직원 및 조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중인 본교 교원, 직원 및 조교
4. 휴학·정학·국내외 교류수학(해외인턴십 포함) 중인 본교 학생

④ 총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직무대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의 관리(관할선관위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관위와의 협의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6.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의무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및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외부인사 후보자의 추천인이 된 경우
 5. 위원 본인,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후보자가 된 경우
 6.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 본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 수행 또는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추천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보궐) 위원이 해임 또는 사임 등으로 결위 시 총장은 그 결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공고 후 결위된 경우에는 그 결위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 중 약간인을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개최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휴직·정직자 제외), 조교(휴직·정직자 제외) 및 학생(휴학생, 정학 중인 학생, 국내외 교환학생, 해외인턴십 중인 학생 제외)은 선거권을 가진다.

③ 제2항의 선거권자의 투표반영비율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피선거권) ① 다음 제1호·제2호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고 제3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제12조제1항의 교원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총장, 교수 또는 부교수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제12조제1항의 교원 선거인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3. 후보자 등록 신청 당시의 총장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다만,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한다)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연구 또는 연구비 부정행위, 성희롱·성폭행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총장 등의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총장, 대학평의회의장, 교수회장, 교수노조위원장,

직장협의회장, 직원협의회장이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 대행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② 총장이 임명한 다음 각 호의 보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학원장 및 학과장
2.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0조 제1항의 처장
3.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1조 제1항의 단장
4.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부속시설 등의 장
5. 교양교직과정정부장

제4장 선거기간 및 후보자등록

제15조(선거관리의 위탁) 선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관할선관위에 위탁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16조(선거기간과 선거일) ①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선거기간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선거일은 관할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에 속한 날 중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제17조(선거공고 및 초빙공고)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등 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선관위와 협의하고, 관할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천위원회는 선거공고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을 위한 초빙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7일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교원·직원·조교·학생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할선관위에 송부하고,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결선투표 이상의 투표가 예상되는 경우 1차 선거인명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정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 선관위·이의신청자·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 존속기간까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방법으로 투표할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써 작성, 열람, 전송하는 방식을 적용하되,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9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기탁금 납부 증명서(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교원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후보자 추천서(외부인사에 한함)
5. 보직사퇴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기타 관할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제2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종류와 양식, 그 밖에 후보자등록신청의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관할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과 제2항 각 호의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사본 각 1부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이력서
3. 최종학위 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4. 공정행위 서약서
5. 공약이행 서약서
6. 대학발전계획서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8.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게시할 수 있다.

⑦ 후보자가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천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선거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한다.

⑧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총장임용후보자 확정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2.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③ 관할선관위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선거공보
2.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3. 전화(문자 포함, 이 경우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선거벽보

③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배부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일에 실시하는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 후보자는 제2항 각 호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⑤ 선거인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⑥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한다)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게재하여야 한다.

1. 성명, 기호 및 사진
2. 학력 및 주요 경력
3. 주요 연구업적 목록
4. 대학관 및 총장관
5. 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소견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선거공보를 검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선거공보를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송하게 할 수 있다. 단, 학생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홈페이지에만 게시한다.

⑥ 후보자가 제1항제2문에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⑧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이 거짓 사실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붙일 수 있다.

⑨ 선거공보의 규격·면수·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추천위원회는 개최방법, 횟수, 일시, 장소를 정하여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개토론회의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의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공개토론회의 동영상상을 게시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학내의 기관, 학과, 단체, 선거인, 후보자는 소규모의 정견발표회,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그 밖의 집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때에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이 토론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② 후보자는 제1항제1호·제2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2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선거홈페이지에 글이나 화상·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본교 계정(@kumoh.ac.kr)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음성·동영상을 제외한 글, 그림, 사진, 이미지 정보에 한한다)

② 후보자와 선거인은 선거홈페이지 외에 총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그 밖의 SNS상의 개인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본교 계정 외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제19조제4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자질·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④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화상·동영상 등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선거홈페이지는 총장이 개설하고, 추천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27조(선거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것으로 본다.

④ 선거벽보의 작성수량·첨부수량·규격·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선거인의 지지 호소 등) ①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전화·문자메시지), 제26조제1항제2호(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 제26조제1항제1호의 선거홈페이지에 글·화상·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② 선거인이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전화·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본교의 구성원(선거인에 한하지 아니한다)은 누구든지 제21조제1항의 선거운동의 정의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선거홈페이지 및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논평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비방 행위를 금지한다.

제29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제14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람 또는 계(팀)장급 이상 직원(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은 그 소속·담당하는 기관·부서·실·팀 등에 속한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부정선거운동 금지 및 제재)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 등을 하는 행위
 2.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행위
 3.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행위
 4. 추천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직원에게 보직 또는 인사 그 밖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경고, 시정 명령 또는 자격 박탈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본 장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제22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 이라 한다)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고 있음을 안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절차

제32조(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관위가 관리하되, 추천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② 관할선관위는 제33조(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방법에 있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효별·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추천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관위의 바로 위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와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위 두 방법을 병행하거나 단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투표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34조(투표 및 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교원선거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제33조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그 밖의 투표·개표의 참관, 개표관람은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로 선정하며, 그 선정은 득표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이하 “제1차 투표”라 한다)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순위에 따른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득표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그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선정순위를 정한다.

③ 제1차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결선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총장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가 정해지는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의 투표에서의 득표순위에 따라 정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선정결과 통보 및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2명의 선정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학내에 공고한다.

② 총장은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총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일 등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에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제39조(연구윤리검증 및 선정 취소) ① 추천위원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정공고 후 총장임용 후보자 2명의 최근 5년간(후보자 등록신청일 기준) 연구 실적에 대하여 금오공과대학교 연구 윤리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증 의뢰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추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이 판명되었고 해당 연구윤리 위반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후보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 취소를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검증 결과를 포함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총장 및 총장 임용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40조(선정 무효·취소에 따른 재선정 등) ① 추천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무효 또는 선정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한다.

1. 이 규정에 따라 선정 공고된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 무효 또는 선정 취소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제16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을 재공고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이 규정에 따라 선정 공고된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 무효 또는 선정 취소된 경우에는, 제1차 투표 시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하는 1명을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 중 본교에 근속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을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② 기타 총장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업무 협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 11. 3. 규정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6. 11. 24. 규정 제9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1. 3. 19. 규정 제11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1. 4. 16. 규정 제118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